

교원업적평가규정 시행세칙

시행: 2023.07.10.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세칙은 교원업적평가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관부서) ① 평가업무 관리와 관련하여 연구(산학)영역은 연구처, 교육영역은 교무처 학사지원팀, 실천영역은 교무처 교무팀에서 담당한다.

② 교원업적평가의 총괄업무는 교무처 교무팀에서 담당한다.

제3조(비밀유지) 평가업무에 관여한 교직원은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 2 장 영역별 평가방법

제4조(연구<산학>영역 평가) 연구(산학)영역 평가 내역은 「교수연구실적 평정규정」에 의거하여 연구실적 및 산학협력연구실적으로 구성한다.

제5조(교육영역 평가) 교육영역 평가는 [별표 2]에 의거하여 평가한다.

제6조(실천영역 평가) 실천영역 평가는 [별표 3]에 의거하여 평가한다.

제7조(대학(원)장의 소속 교원에 대한 평가) 학과와 대학의 발전에 대한 기여를 반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1. 대학(원)장 평가
 - 가. 대학(원)장은 각 소속 교원에게 0점~100점의 점수(대학평균 50점)를 부여할 수 있다.
 - 나. 대학(원)장은 각 소속 교원의 대학 발전에 대한 학과 기여도(10점 이상 차이 권장)와 업무실적(10점 이내 차이 권장)을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2. 대학(원)별 자율평가
 - 가. 대학(원) 교원업적심사위원회(이하 '업적심사위원회'라 한다)는 각 소속 교원에게 0 ~ 50점의 자율 평가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 나. 업적심사위원회는 대학(원)별 특성을 반영한 자율평가점수에 대한 세부 항목 및 기준을 수립하고, 교무처 교무팀에 문서로 제출한다.
 - 다. 업적심사위원회는 수립된 기준에 따라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교원별 점수를 부여하고, 대학(원)장은 그 결과를 전산시스템에 반영한다.
 - 라. 대학(원)별 자율평가 점수는 본 조항 제1호 대학(원)장 평가점수 및 [별표 3] 실천업적 내 학내봉사 실적과 평가항목 및 내용이 중복될 수 없다.
3. 대학(원)장은 소속 교원에게 부여한 점수와 평가의 근거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시 교무처장에게 제출 해야 한다.

제 3 장 차등그룹 기준

제8조(차등그룹 선정 기준) ① 「교원업적평가규정」 제11조 제2항에 의한 "E, S1, S2, G"급 분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평가단위별로 차등그룹을 달리 선정할 수 있다.

1. "E, S1, S2, G"급은 [별표 1]의 평가계열 내에서 최근 2년간 누적 업적평가종합점수를 근거로 설정하며, 등급구분을 위한 기준점수는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4년 주기로 재설정할 수 있다.
2. 교원업적평가위원회는 평가대상기간 및 대상기간 직전년도에 징계를 받은 교원, 평가대상기간에 조건

- 부 재임용된 교원,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등급선정 부적격 판단을 받은 교원에 대하여는 “G”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3. 평가대상기간 중 휴직 교원은 “등급없음”으로 한다. 단, 평가 대상기간(1년 단위) 중 휴직기간이 6개 월 미만인 경우 업적평가 당해연도를 포함한 최근 2년간 누적 업적평가종합점수로 차등그룹을 부여 한다.
 4. 교원인사기본규정 제13조(휴직) 제1항 제7호 및 제7의2호에 의한 휴직일 경우 휴직기간 동안 “등급 없음”으로 하되, 제1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간의 업적평가종합점수가 “S1”급 이상일 경우 업적평가종합점수에 따른 등급을 부여한다.
 5. 교원인사기본규정 제13조(휴직) 제1항 제6호, 제7호 및 제7의2호에 의한 휴직을 하고 복직한 경우에 복직연도와 그 후 2년간(총 3년) “S2”급을 보장받으며 휴직기간을 포함하여 최근 2년간 누적 업적평가종합점수가 “S2”보다 높을 경우 업적평가종합점수에 따른 등급을 부여한다.
 6. 교원인사기본규정 제17조에 따른 파견 교원은 파견 개시연도부터 복귀연도까지 “S2”급을 보장받으며, 파견기간을 포함하여 최근 2년간 누적 업적평가종합점수가 “S2”급보다 높을 경우 업적평가종합점수에 따른 등급을 부여한다.
 7. 연구년 교원은 연구년 개시연도와 종료연도에 “S2”급을 보장받으며, 연구년 기간을 포함하여 최근 2년간 누적 업적평가종합점수가 “S2”급보다 높을 경우 업적평가종합점수에 따른 등급을 부여한다.
 8. 신임교원의 경우 임용연도를 포함하여 2년간 “S2”급을 보장받으며, 최근 2년간 누적 업적평가종합점수가 “S2”급보다 높을 경우 업적평가종합점수에 따른 등급을 부여한다.
 9. “E”급은 업적평가종합점수 등급 기준을 충족함과 동시에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가. 연구(산학)영역 실적점수가 업적평가종합점수의 40% 이상
 - 나. 업적평가 차등그룹 선정기간 동안 강의를 수행한 학기의 학기별 강의평가점수 평균이 85점 이상. 단, 팀티칭 강좌는 평균 점수 산정시 제외 가능

- ②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등급은 최근 2년간 누적 업적평가종합점수를 근거로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 ③ 평가단위별 업적평가 마감 이후 확인된 업적의 누락이나 오류는 기 결정된 업적평가 및 차등그룹에 영향을 줄 수 없다.

제9조(교무위원의 차등그룹 선정 기준) ① 교무위원은 보직 임명연도부터 면직연도까지 “S2”급을 보장하되 보직기간을 포함하여 최근 2년간 업적평가종합점수가 “S2”급 보다 높을 경우 업적평가종합점수에 따른 등급을 부여한다. 단, 보직 임명 전 기준 최근 3년간의 업적평가 차등그룹 “E”급을 2회 이상 받은 교무위원은 보직 임명연도부터 면직연도까지 “S1”급을 보장하되 해당 기간의 업적평가종합점수가 “S1”급 보다 높을 경우 업적평가종합점수에 따른 등급을 부여한다.

② 처무규정 제6조 제1항의 부총장 책임 영역에 따라 부총장은 산하 각 교무위원의 업무실적을 평가하여 “S1”급 또는 “G”급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대상자의 수는 부총장 책임 영역 산하 교무위원 수의 30%(내외부총장의 경우 50%)를 초과할 수 없다.

③ 교무위원은 보직 면직 후 2년간 “S2”급을 보장하며, 보직 임명 전 기준 최근 3년간의 업적평가 차등그룹 “E”급을 2회 이상 받은 교무위원은 “S1”급을 보장(보직 면직연도를 포함하여 총 3년간 보장)하되, 최근 2년간 누적 업적평가종합점수가 보장 등급보다 높을 경우 업적평가종합점수에 따른 등급을 부여한다. 단, 교무위원 보직수행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보직 면직연도를 포함하여 총 2년간 적용한다.

제10조(보칙) 본 시행세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여 총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부 칙

- ① 본 시행세칙은 200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세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수업적평가심사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 ① 본 시행세칙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본 시행세칙 제9조 1호, 3호 내지 5호는 2009년 실적만 반영하여(2개년의 50% 적용) 2009년말 교수업적평가시부터 적용하여 2010년 연봉산정에 반영한다.

③ (적용범위) 본 시행세칙 시행일로부터 “나, 다, 라”군 소속 교수에 대한 시행 지침은 폐지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08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본 시행세칙 제 5조, 별표 3, 4 2010년 교수업적평가시부터 적용한다.

부 칙

본 시행세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시행세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적평가에 대한 경과조치) 2017년도 업적평가에 한하여 본 시행세칙 외에 종전 시행세칙(2013.3.1.부 개정시행세칙)을 적용한 업적평가를 추가로 실시한다.

제3조(차등그룹 선정에 대한 경과조치) ① 본 시행세칙 개정 후 제9조(차등그룹 선정 기준) 등 본 시행세칙에서 정한 방식에 의한 평가단위별 차등그룹의 선정은 2019년부터 적용한다.

② 본 시행세칙에 의한 평가단위별 차등그룹 선정은 2019년에만 상대평가로 정하고, 2020년부터 이를 근거로 등급구분의 절대점수를 설정하여 정한다. 상대평가 비율은 “E, S1, S2, G”급에 대하여 각 10%, 25~30%, 50%, 10~15%로 한다.

③ 2017년도 및 2018년도 평가단위별 차등그룹의 선정은 종전의 시행세칙(2013.3.1.부 개정시행세칙)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2] 및 [별표3] 개정사항은 2021년 업적평가(평가대상기간 2021.1.1.~2021.12.31.)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규정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제7조(대학(원)장의 소속교수에 대한 평가), 제8조(차등그룹의 선정 기준),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된 내용은 2023년 교원업적평가(평가대상기간: 2023.1.1.~2023.12.31.)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본 규정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제8조(차등그룹의 선정 기준)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5호는 2022년 교원업적평가 차등그룹 선정부터 적용한다.

② 제9조(교무위원의 차등그룹 선정) 제1항 및 제3항은 시행일 현재 보직 수행 중인 교무위원에 대하여 2023년 교원업적평가 차등그룹 선정부터 적용하되, 시행일 전 면직된 교무위원은 개정 전 조항을 적용한다. 단, 제3항의 보직 수행 기간 2년 미만에 대한 교무위원의 업적평가 등급 적용 사항은 2021년 4월 29일 이후 임명되어 현재 보직 수행 중인 교무위원부터 적용한다.

[별표 1] 평가계열 구분표

평가계열 구분표

평가계열	단과대학(전공)
인문·체육	문과대학, 외국어대학, 체육대학, 본 계열관련 특수대학원 및 연구소(부서 포함)
사회	법학전문대학원, 법무대학원, 정경대학, 경영대학, 호텔관광대학, 생활과학대학(주거환경, 의상학, 아동가족), 이과대학(인문자리 전공), 국제대학, 국제대학원, 평화복지대학원, 한의과대학(원전학, 의사학 전공자, 한의교육학),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교육학),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학교육학, 의인문학), 본 계열관련 특수대학원 및 연구소(부서 포함)
예술·창작	음악대학, 미술대학, 예술·디자인대학, 공과대학(건축학과), 무용학부, 본 계열 관련 특수대학원 및 연구소(부서 포함)
공학	공과대학(산업경영공학과, 사회기반시스템공학과, 건축공학과, 건축학과 제외), 전자정보대학, 소프트웨어융합대학, 본 계열 관련 특수대학원 및 연구소(부서 포함)
자연계 A	이과대학(물리학과, 화학과, 생물학과, 정보디스플레이학과), 약학대학(임상약학, 임상한약학, 사회약학 및 산업약학 제외), 기초 의·치·한의학 계열 대학(원), 응용과학대학(응용수학과 제외), 생명과학대학, 동서의학대학원, 본 계열 관련 특수대학원 및 연구소(부서 포함)
자연계 B	이과대학(수학과, 자연지리전공), 간호과학대학, 응용과학대학(응용수학과), 생활과학대학(식품영양학과), 공과대학(산업경영공학과, 사회기반시스템공학과, 건축공학과), 본 계열 관련 특수대학원 및 연구소(부서 포함), 약학대학(임상약학, 임상한약학, 사회약학 및 산업약학)
임상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임상),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임상), 한의과대학(임상), 본 계열 관련 특수대학원 및 연구소(부서 포함)

※ 교원의 평가계열은 신입생 입시모집단위를 기준으로 하되, 해당 교원의 최종 학위 등 객관적 근거가 있을 경우 대학(원) 교원인사소위원회 및 교원업적평가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결재를 거쳐 변경할 수 있음

※ 단과대학(전공)의 특성에 따라 평가계열의 변경 및 신설이 객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원업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 및 신설할 수 있음

※ 후마니타스칼리지 소속 교원은 최종학위의 계열을 적용함

[별표 2] 교육업적 평가 기준표

교육업적 평가 기준표

순번	중분류명	소분류명	점수	비 고																				
1	초과강의	15시수 초과 강의(정년트랙) 24시수 초과 강의(비정년트랙)	10	시수 당 (연 120점 제한)																				
2		혁신적 수업모형 개발	100	3학점 강좌에 한함 (팀티칭: 점수/교원 수) *교수학습개발원 주관 사업에 한함																				
3	강의개선	강의평가점수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구간</th>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교육업적 부여점수</th> </tr> </thead> <tbody> <tr><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95점 이상</td><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300</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90점 이상 ~ 95점 미만</td><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250</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85점 이상 ~ 90점 미만</td><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200</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80점 이상 ~ 85점 미만</td><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150</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75점 이상 ~ 80점 미만</td><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100</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70점 이상 ~ 75점 미만</td><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50</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65점 이상 ~ 70점 미만</td><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0</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60점 이상 ~ 65점 미만</td><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50</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60점 미만</td><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100</td></tr> </tbody> </table>	구간	교육업적 부여점수	95점 이상	300	90점 이상 ~ 95점 미만	250	85점 이상 ~ 90점 미만	200	80점 이상 ~ 85점 미만	150	75점 이상 ~ 80점 미만	100	70점 이상 ~ 75점 미만	50	65점 이상 ~ 70점 미만	0	60점 이상 ~ 65점 미만	-50	60점 미만	-100	-100 ~ 300	강의학기의 강의평가점수의 평균에 따라 구간별 차등 적용
구간	교육업적 부여점수																							
95점 이상	300																							
90점 이상 ~ 95점 미만	250																							
85점 이상 ~ 90점 미만	200																							
80점 이상 ~ 85점 미만	150																							
75점 이상 ~ 80점 미만	100																							
70점 이상 ~ 75점 미만	50																							
65점 이상 ~ 70점 미만	0																							
60점 이상 ~ 65점 미만	-50																							
60점 미만	-100																							
4		강좌 수강인원별 점수 부여 *일반강좌 기준 60명 이상 130명 미만 강좌(원 격수업교과목은 별도로 정함)		수강인원 × 개인별 책임강의시간 인정시수 × 0.1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구함)																				
5		수업 컨설팅 참여	10	단계별 각 10점 (총 3단계) *직전년도 강의평가 점수 평균 80점 미만 교원의 경우 3단계 모두 참여해야 함																				
6		직전년도 강의평가점수 평균 80점 미만 교원이 교수학습개발원의 수업컨설팅을 받지 않을 경 우	-50																					

7		교수법 특강	10	건당 / 연 200점 제한
8		신입생 세미나 1 담당 (국제캠퍼스 해당)	10	학점 당
9		학생 상담 (내국인)	2	건당 / 연 100점 제한
10		학생 상담 (외국인)	4	
11		현장실습 순회지도 (현장실습 순회지도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15	순회지도 회당 / 연 150점 제한
12		현장실습 기관발굴 (현장실습 관련 활동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15	발굴 당해 학기 및 (학생)참여 학기 당/ 연 150점 제한
13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 개설 및 강의	- 강의, 출품, 입상 중복 인정 가능	15
14		캡스톤 디자인: 지도 및 출품	- 지도 및 출품의 경우 교내외 경연대회 및 공연 에 한하여 인정	5
15		캡스톤 디자인: 교내외 수상 실적	- 지도 및 출품, 입상은 동일 학생에 대한 여러 교수의 실적 불인정	10
16	법정의무교육	인권센터 주관 폭력예방교육 장애인생지원센터 주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정보처 주관 개인정보보호교육	10	시간당 / 연 100점 제한
17	우수강의	우수강의 교수상 수상	50	
18		경희 Fellow (교육부문) 수상	100	
19	학생지도 (특수대학원 제외)	석사 배출	20	인 당
20		박사 배출	50	인 당
21	강의 운영	MOOC 강좌 운영	50	2명 이상: 점수/교원 수
22		중핵교과 담당	10	강좌 당 (팀티칭: 점수/교원 수)
23		온라인 콘텐츠 운영 (※ 30, 31항목으로 개발된 강좌 대상)	50	200~500 명 미만 팀티칭: 점수/교원 수
			100	500명 이상

24		성적입력	학부 담당 강좌 중 성적입력기간 내 성적등급 입력을 미완료한 경우	-10	점수 누적 적용	
			학부 담당 강좌 중 성적입력기간 내 세부성적 입력을 미완료한 경우	-10		
25		강의계획서 입력	수강희망과목담기 시행일 전까지 학부 담당 강좌의 강의계획서 입력 을 미완료한 경우	-10	점수 누적 적용	
			수강신청 시행일 전까지 학부 담당 강좌의 강의계획서 입력을 미완료 한 경우	-10		
			개강일 전까지 학부 담당 강좌의 강의계획서 입력을 미완료한 경우	-10		
26		학생설계전공 지도		20	건 당	
27		마이크로디그리 교과목 운영		10	학기별 교과목당 부여 연 40점 제한	
28	강좌 개발	MOOC 과목 개발		60	2명 이상: 점수/교원 수	
29		EduTech 활용 교육콘텐츠 개발 *교수학습개발원 주관 사업에 한함		300	팀티칭: 점수/교원 수	
30		온라인 콘텐츠 개발(1급) *교수학습개발원 주관 명품온라인강좌		300	팀티칭: 300/교원 수	
31		온라인 콘텐츠 개발(2급) *교수학습개발원 주관 기획강좌		200	팀티칭: 200/교원 수	

※ 교원업적평가위원장은 [별표 2]에 포함되지 않은 실적에 대하여 그 특성과 대학발전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강좌 수강인원별 점수 부여

- 수강인원 산정 시점: 수강신청 정정기간 종료시점 기준
- 개인별 부여 점수: 해당 학년도 담당 강좌별 부여 점수 합산
- ‘원격수업운영규정’에 따른 원격수업교과목에 대해서는 ‘책임강의시수 및 강의료 지급에 관한 지침 [별표 1] 강좌유형별 강의시수 인정기준표’의 대형강좌 인정기준에 따름

※ 현장실습 기관 발굴 실적은 학생 미참여 학기는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발굴 첫 학기는 학생 미참여의 경우에도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

※ 법정의무교육 항목: 상기 명시한 교육 외 법령에서 정하는 법정의무교육을 교내 주관부서에서 시행하고 해당 부서를 통해 이수 확인이 가능한 경우 인정할 수 있음

※ 강의계획서 입력 항목: 발령 등의 사유로 교강사의 강의 개설 시기가 상이한 경우 강의 개설 및 배정 시점부터 강의계획서 입력 여부를 파악하여 감점이 차등 적용되며, 강의계획서 미완료 시기에 따라 감

점 누적 적용

[별표 3] 실천업적 평가 기준표

실천업적 평가 기준표

[학내봉사]

순번	중분류명	소분류명	점수	비 고
1	학내회의 참가	의무 단과대학 전체 교수회의, 교수 세미나, 대학 워크샵, 학과 교수회의	20	교수당 기본 20점 의무불이행 시 감점 (학과장이 평가, 감점기준 자체 설정)
2		권장 단과대학내 위원회 위원		부여점수 자체설정 연 30점 제한
3		전교적 위원회 위원 (거교적 대외사업 참여위원 포함)		학무부총장이 점수 부여 (최대 200점)
4	교내보직 (교무위원 제외)	센터장, 부학장, 학과장	50	겸직일 경우 높은 점수만 인정
5		교내 연구소장(교내 부속기관에 한함)	25	겸직일 경우 높은 점수만 인정
6	교내 단체활동	교수의회 지회장	50	겸직일 경우 높은 점수만 인정
7		여교수회 회장	30	겸직일 경우 높은 점수만 인정
8	기부금	교수의회 임원 (감사, 사무총장, 운영위원장, 대의원 등)	30	겸직일 경우 높은 점수만 인정
9		여교수회 임원 (감사, 사무총장, 운영위원장, 대의원 등)	10	겸직일 경우 높은 점수만 인정
8	기부금	발전기금 유치(대외협력처 확인)	300	1억원 당 (유치액/1억원 × 300점)
9		본인 기부금	15	100만원 당

[학외봉사]

순번	중분류명	소분류명	점수	비 고
----	------	------	----	-----

1	교외 단체 및 학회 활동	교외단체장 및 공인된 학회장, 국제학술지(SCI, SSCI, A&HCI, SCI(E), SCOPUS) 편집위원장 (Editor-in-chief, Editor)	50	연 100점 제한
2		국제학술지(SCI, SSCI, A&HCI, SCI(E), SCOPUS) 편집위원	30	
3		공인된 학회 부회장 / 편집위원장 / 분과위원 장 / 학회임원 / 이사 / 감사 / 평(대)위원 / 편집위원	20	
4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위원장급 (1년 이상, 장관급 이상 명의 위촉장 필요)	20	
5		국제학술대회 조직위원장, 운영위원장, 프로그램위원장	20	
6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각종 위원 (각 단체장 / 기관명의 위촉장 필요)	10	
7		민간단체 위원장	10	
8		국내학술대회 조직위원장, 운영위원장, 프로그램위원장	10	
9		국제학술대회 조직위원, 운영위원, 프로그램위 원	10	
10		국내학술대회 각종 위원	5	
11	교외 특강 및 강연	외국대학 특강	10	
12		특강(학술회의 특강 및 초청강의 제외) 및 국 내학술대회 좌장	5	
13	교외 출제위원	각종 국가고시 출제	10	
14	교외 심사/평가 위원	올림픽경기 심사위원 또는 심판, 신문사 신춘 문예 심사위원, 전국 음악관련 콩쿨 심사위원, 중앙교육평가위원 등	5	
15		학회제출 논문심사, 학술단체 및 공공기관 연 구제안서 심사 등	5	

16	방송출연 및 기고	교외방송출연 및 언론기고 등	5	
17	의료봉사	의료봉사	5	

[수상]

※ 교원업적평가위원회는 [별표 3]에 포함되지 않은 실적에 대하여 그 특성과 대학발전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순번	중분류명	소분류명	점수	비 고
1	학내수상	총장상, 목련상 수상 등	100	연 100점 제한
2	학외수상	봉사활동 관련 국가수상 및 훈장 실적: 훈장(1-2등급), 대통령표창	100	
3		국내학회 학술상, 국외학회 학술상	90	
4		봉사활동 관련 국가수상 및 훈장 실적: 훈장(3등급 이하), 국무총리표창 이하	80	
5		국제학술대회 논문상	80	
6		봉사활동 관련 민간단체(법인체) 수상 및 공훈 실적	50	
7		국내학술대회 논문상	30	

※ 실천업적은 [학내봉사], [학외봉사], [수상]으로 분류되며, 각 [학외봉사] 및 [수상] 실적의 연간 제한 점수는 100점으로 함